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24,554,848	201,736,645
일반회계		6,039,701,621	181,191,049
특별회계		684,853,227	20,545,597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684,853,227	20,545,597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43,710	4,311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395,634,424	11,869,033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55,877,974	1,676,33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06,351	99,19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4,161,703	124,851
	소방특별회계	225,729,065	6,771,87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921,80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